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5월 12일, 박수현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5월 1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6.2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5.7.10.)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7.14.) 상정, 소위심사보
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박수현 의원)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이라 함)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자연재해와 이상기후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에도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는 5년으로, 비교적 장기로 규정되어 있어 농어업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빈번한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농가 및 어가는 경영위기에 더욱 취약해지고 있는데, 재해보험의 목적물은 그 범위가 한정적이고 정부가 지원하는 재해보험료의 비율도 충분하지 않아 재해보험에 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가. 기본계획 수립 주기 단축 및 포함 사항 추가 등(안 제2조의2)

박수현의원안에서 그 수립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은, 이상기후로 인하여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농어업재해보험 관련 자연적·사회적 여건 변화를 기본계획에 적시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

지로 이해됨.

관련 입법례를 살펴보면, 농식품부 소관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계획 16개 중 15개의 수립 주기가 5년(1건은 미정)이고 타 부처 소관 법률에서 대부분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정하고 있음.

다만, 주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는 법률도 일부¹⁾ 존재함.

기본계획은 중장기적 시각에서 보험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것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임.

이와 관련하여 윤준병·문대림·이원택 의원안에서 기본계획의 변경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바, 박수현의원안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농어업재해보험과 관련된 자연적·사회적 여건 변화에 적시에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로, 지난 2024년 11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 안전조정위원회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서는 윤준병·문대림·이원택 의원안과 같이 기본계획의 변경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나. 정부 및 지자체의 보험료 의무 지원비율 명문화

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3년 단위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수립주기를 단축하거나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2(벤처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벤처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농어업재해보험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 피해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최소한의 안전망 기능을 하고 있음.

개정안은 농어업인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통해 현재 54% 수준인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을 제고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영안정과 재생산 활동을 적극 보장하기 위한 것임.

또한, 국가재정의 보험료 지원 비율을 상향하여 지방재정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재해보험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각 개정안에 따를 경우 정부는 보험료를 기존 50%의 보험료 지원수준을 높여 60~80%까지 지원하게 되는 반면 지자체의 평균 부담 비율이 현행 37.5%보다 낮아지는 효과가 있고, 농어업인의 자부담 비율은 어기구의원안에 따를 경우 10% 이하로 감소하게 됨.

이에 따르면 보험료의 20%까지 자부담하고 있는 농어업인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이나, 평균 자부담 비율이 12.5%인 점을 고려하면 보험가입자 전반에 대한 보험료 부담 경감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지방재정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재

해보험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음.

다만, 이는 보험료 지원에 대한 국가재정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수반하므로 해당 재원 마련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어이구의원안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5년간 총 5,222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데, 지방비 부담은 1조 545억원 감소하는 대신 국비 부담이 1조 5,767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둘째, 보험료 지원 비율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과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²⁾에서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국고보조율을 매년 예산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책보험에 관한 보험료 지원 비율을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 위임하여 규정해온 취지를 고려할 때 적정 지원 비율과 법률상 명시 여부에 대해서는 타 정책보험과의 형평성 문제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셋째, 일반적으로 적정 수준의 자부담 비율 설정은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데, 어이구의원안에 따라 보험가입자의 자부담 비율이 10% 이하로 감소할 경우 정책적 차원에서 농어가 등의 재해 피해 예방 노력을 유도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점에 대한 고려도 필요해 보임.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①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이원택)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